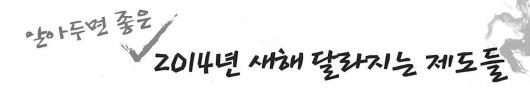
달리자, 2014년!



농식품

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

-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말, 꿀벌에 대하여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받을 경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하여 판매 가능
- ※ 토종가축 인정기관(5개 기관): 한국종축개량협회(한우·토종돼지), 한국토종닭협회(토종닭), 한국오리협회(토종오리),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(토종말), 한국한봉협회(토종벌)

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

- •소·돼지·닭·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14년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
- •정부에서는 1 3년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
-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'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
- ※ 모든 가축사육업 하가·등록 대상은 '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- ※ 참고: www.mafra.go.kr〉정보광장〉법령정보〉입법·행정예고

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

- •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`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
- ▶도축업자·식육포장처리업자·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,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
- ※ 법률제명: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

동물등록제 확대 시행

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(다만,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·관리할 수 없는 읍·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)



환경/국토

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

-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 시행
- '12년 하수오니·가축분뇨, '13년 음폐수·분뇨, '14년 산업폐수·폐수오나
-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.
- 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

전국 버스·지하철·철도·고속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!

*버스·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,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

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불품 기준 개선

- •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「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 기준 변경
- 긴 우산· 손톱깎이· 접착제· 와인따개· 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
-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

복지/고용

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

-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'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
- •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%의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$10\sim20$ 만 원 $^\circ$ 의 기초연금을 지금(**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제외)

최저임금액 인상

- 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,210원으로 인상
- •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,088,890원(5,210원×209시간)
- 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적· 일용직·시간제 근로자,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